



서울특별시
문화체육관광국

고향과 함께, 사랑을 같이. 기부로 나눔

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

고향사랑기부제
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
자신의 원치않는 원주민 거주지
단체에 할양액을 기부하여
세액공제 및 담세료 등의
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



꼭!

참아서 기부하면
고향이

쏙!

지정기부란?

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**자치단체**의 **자민 중에서도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기부**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(고향사랑기부금법, 제8조의2)

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

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'자치단체'에 기부

지정기부 '자치단체'가 아닌 '사업'에 기부

기부 혜택

-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(세액공제 10만원 + 담세료 3만원)을 돌려드립니다.
-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
 - 10만원 이하 소득세에서 공제 (세액 공제)
 - 10만원 초과분은 16.5% 세액 공제
- 기부금액의 30% 상당 지역상생금, 혁신상을 등
고향의 마을을 담은 담세료 제공

기부처

주민등록상 주소지(읍면) 기초단체
제외한 지자체

기부자

기부자는 개인만 가능
(법인, 단체 불가)

기부액

개인별 연간 2,000만원 이내

기부방법

- 온라인
- 고향사랑을 시스템
- 오프라인
- NH농협은행 대면접수



고향사랑을



은평구 자치행정국 ☎ 02-351-6305